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도 및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검 토 보 고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보증동의안〉

■ 정 부 제 출(의안번호 제2209544호)

■ 정 부 제 출(의안번호 제2212669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2025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	
보증동의안(의안번호 제2209544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1
II.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	
보증동의안(의안번호 제2212669호)	3
1. 제안경위	3
2. 제안이유	3
3. 주요내용	3
III. 검토의견	5
1.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 개요	5
2. 채권 발행규모의 적정성	9
3. 지원 대상의 타당성	22
[참 고]	27

I . 2025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제2209544호)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정 부

나. 제 출 일 : 2025. 4. 2.

다. 회 부 일 : 2025. 4. 3.

2. 제안이유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5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국가가 보증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자 제안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채 무 자 : 한국산업은행

나. 채 권 자 :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소유자

다. 발 행 액 : 원화기준 10조원 이내

(외화의 경우 발행당시 매매기준율 적용)

라. 보 증 액 :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원리금

마. 발행방법 : 공모 또는 사모발행

바. 발행금리 : 시장금리를 참작하여 별도 결정

사. 상환기간 : 채권발행일로부터 20년 이내

아. 상환재원 :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

자. 자금사용계획 :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9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 지원

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함

Ⅱ.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제2212669호)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정 부

나. 제 출 일 : 2025. 9. 3.

다. 회 부 일 : 2025. 9. 4.

2. 제안이유

첨단전략산업의 경쟁 격화에 대응하여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채 무 자 : 한국산업은행

나. 채 권 자 :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소유자

다. 발 행 액 : 원화기준 15조원 이내

(외화의 경우 발행당시 매매기준율 적용)

라. 보 증 액 :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원리금

마. 발행방법 : 공모 또는 사모발행

바. 발행금리 : 시장금리를 참작하여 별도 결정

사. 상환기간 : 채권발행일로부터 20년 이내*

*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만기는 기금 운용기간(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를 반영한 산은법 개정안의 시행일로부터 20년) 이내로 설정

아. 상환재원 :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8 제1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

자. 자금사용계획 :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9 제2항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사용

차. 발행시기 : 2026년 중

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함

Ⅲ. 검토의견

1.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 개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이 국가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고 첨단전략산업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음에 따라,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하기로 발표하였음.¹⁾²⁾

이를 위하여 채권을 발행³⁾하여 조성한 자금 등으로 한국산업은행에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여 5년 동안 첨단전략산업·국가전략기술 영위기업 및 관련 인프라·기술 등에 대해 지원하며, 정부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도록

1) 관계부처합동,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2025.3.)

2) 기금의 운용기간은 20년으로 하고, 자금지원은 5년 동안 이루어질 예정임.

3)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매회 금액 등을 금융위원회 신고하도록 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원금의 소멸시효는 5년, 이자의 소멸시효는 2년으로 함.

록 하는 내용으로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되어 2025년 12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 관련 「한국산업은행법」 주요내용(요약)]

구 분	내 용
기금의 설치 (제29조의7)	□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통하여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함
기금의 재원 (제29조의8)	□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등으로 조성하며,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음
기금의 용도 (제29조의9 제2항)	□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첨단전략산업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출, 자산의 매수, 채무의 보증, 출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자금지원의 요건 (제29조의10 제2항)	□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지원할 때에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거나 기금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등 (제29조의11)	□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정책,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를 둠
기금의 운용 기간 등 (부칙)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 기금의 운용은 시행일부터 20년간으로 함 (다만, 자금지원은 시행일부터 5년간 할 수 있음)

한편, 「대한민국헌법」 제58조 및 「국가재정법」 제92조제1항⁴⁾은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8(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제1항제1호 및 제2항5)에 명시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4) 「대한민국헌법」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재원 중 하나인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발행하면서 이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를 요청하기 위하여 2025년 4월에 「2025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제2209544호)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보증동의안이 처리되기 전에 2025년 9월 차년도 예산안 제출과 함께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제2212669호)을 제출하였음.

5)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8(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29조의9제2항에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한국산업은행은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4.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첨단전략산업기금 개요]

■ 산업은행에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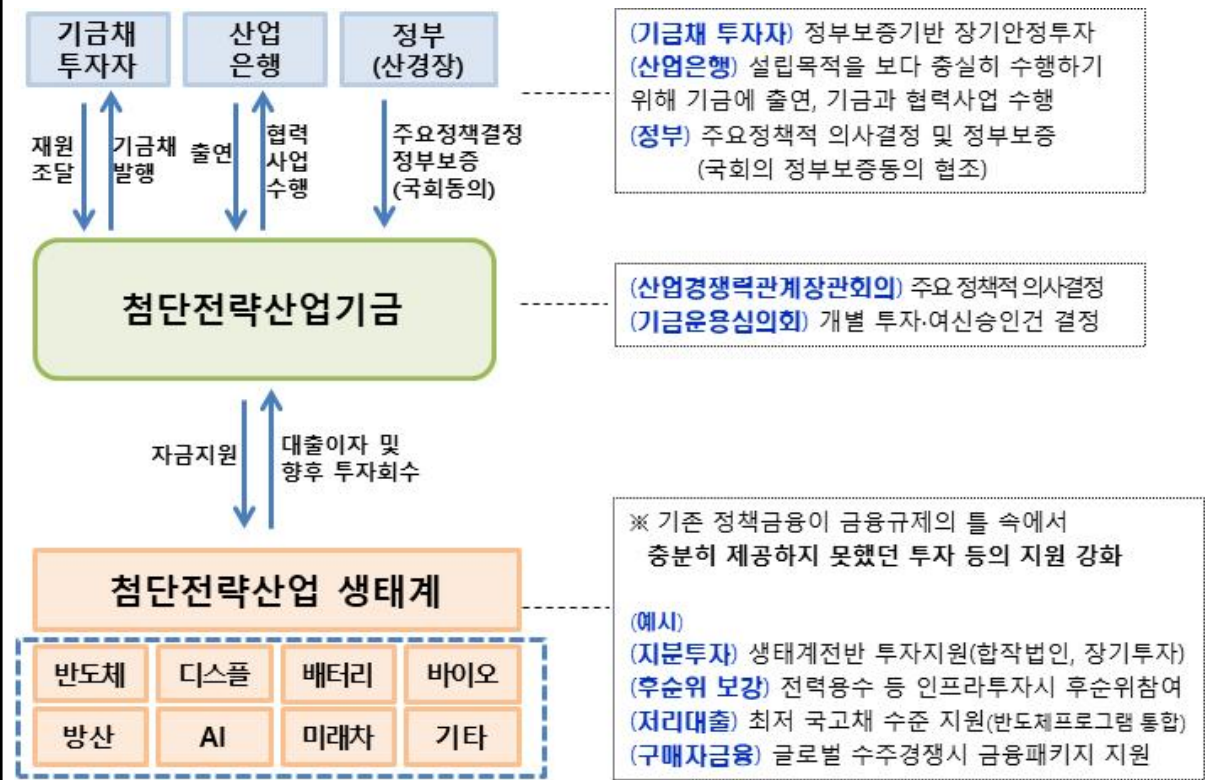
※ 동 자금을 기초로 하여 산은 본체·시중은행과 협력하여 총 100조원 이상 집중지원 가능

- ① (대상) 첨단전략산업·국가전략기술 영위기업(대·중견·중소 전반)* 및 관련 인프라·기술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폭넓게 지원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백신, 로봇, 수소, 미래차, AI 등

- ② (재원) 정부 보증 기금채 + 산은 자체재원 활용 기금 출연 병행
- ③ (지원방식) 저리대출 외에도 지분투자·후순위 보장 등 종합적 지원
- ④ (지원체계) 주요정책 사항은 산경장에서 논의, 개별 자금지원사항은 민간위원 중심의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결정

【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영 개요도 】



자료 : 관계부처합동,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 (2025.3.)

2. 채권 발행규모의 적정성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이 신용 부담 없이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동의안을 제출한 것임.

국가가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경우 해당 채권은 별도의 신용평가 없이 국채에 준하여 신용이 부여되므로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⁶⁾. 한국산업은행은 낮은 비용으로 조달한 자금을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다 저렴한 이율로 대출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음.

본 동의안에서 정부가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채권 지급보증(발행한도) 규모는 원화기준(외화의 경우 발행당시 매매기준을 적용)으로 2025년도는 10조원 이내, 2026년도는 15조원 이내 수준임.

전술한 바와 같이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은 국가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고 경제 성장과 미래 일자리 창출 등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국가 간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을 통하여 대규모 자금을 장기

6) 추가적으로, 해당 자금은 한국산업은행의 회계와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되므로, 한국산업은행은 BIS 하락 등의 부담을 지지 않고도 대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효과도 있음.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9(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운용 및 회계 등) ④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회계와 한국산업은행 및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회계는 한국산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발행한도는 첨단전략산업 투자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산출된 규모임. 산업통상자원부의 업종별 협회를 통한 첨단전략산업 투자수요 조사 결과, 첨단산업 등의 연도별 투자계획은 2025년부터 5년간 약 388조원 수준으로 예상⁷⁾되었으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 규모를 투자수요의 약 15% 수준⁸⁾으로 설정하여 5년간 총 50조원으로 산출함.

[첨단산업 등의 연도별 투자계획(산업부)] (단위 : 조원)

업종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총계
반도체	60.0	60.0	60.0	60.0	60.0	300.0
이차전지	6.7	6.5	4.4	4.9	5.0	27.5
바이오	2.1	1.5	1.5	1.5	1.5	8.1
디스플레이	9.5	9.5	9.5	9.5	9.5	47.5
로봇	0.4	0.4	0.4	0.4	0.4	2.0
방산	0.7	0.7	0.7	0.7	0.7	3.5
소계	79.4	78.6	76.5	77.0	77.1	388.6

* AI 투자수요 100조원 미반영

자료 : 기획재정부

5년간 50조원의 필요자금 중 첨단전략산업 육성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2025년부터 집행을 개시하는 자금집행 전망 및 연도별 채권발

7) 다만, 기획재정부는 위 투자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AI 투자수요 감안 시 첨단산업의 투자수요는 약 500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임

8) 기업 설비투자(CAPEX) 금액의 약 31%가 외부차입인 점을 감안하여 산출함

* 국내 비금융영리법인의 차입금 의존도 31.4% ('23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행 한도를 추산한 결과, 「2025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제출 당시에는 2025년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발행 필요 규모를 10조원으로 산출하였음.

[2025년도 보증동의안 제출 기준 연도별 채권발행 한도 규모 추산]
(단위 : 조원)

구 분	'25년下	'26년	'27년	'28년	'29년	합계
자금집행 ¹⁾ (A)	9.0	10.25	10.25	10.25	10.25	50
자금회수 (B)	-	-	-	1.28	2.31	3.59
순채권상환 (C)	-	-	-	0.80	1.93	2.73
필요자금 (D)=(A)-(B)+(C)	9.0	10.25	10.25	9.77	9.87	49.14
유동성 대응 자금 ²⁾ (E)=(D)x10%	0.9	1.03	1.03	0.98	0.99	4.93
채권한도(F)=(D)+(E)	9.9	11.28	11.28	10.75	10.86	54.1

자료 : 기획재정부

1)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9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용도

2) 자금조달과 집행 시기의 불일치 대응, 예기치 못한 추가적인 정책자금 수요 등에 대비한 예비적 성격의 자금

그러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에 관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정부는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첨단전략산업 육성의 시급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 2026년으로의 기금 대기수요 이연, 기금 초기 출범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 예상 등을 감안하여 2025년 필요자금 및 그에 따른 채권한도를 수정하여 채권발행 필요 규모를 2025년 1.5조원 및 2026년 15조원으로 다시 산출하였음.

[2026년도 보증동의안 제출 기준 연도별 채권발행 한도 규모 추산]
(단위 : 조원)

구 분	'25년下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자금집행 ¹⁾ (A)	1.4	13.6	8.8	8.8	8.8	8.7	50
자금회수 (B)	-	-	-	0.5	1.5	2.3	4.3
채권상환 (C)	-	-	-	0.2	1.1	2.0	3.3
필요자금 (D)=(A)-(B)+(C)	1.4	13.6	8.8	8.5	8.4	8.4	49.1
유동성 대응 자금 ²⁾ (E)=(D)x10%	0.1	1.4	0.9	0.9	0.8	0.8	4.9
채권한도(F)=(D)+(E)	1.5	15.0	9.7	9.4	9.2	9.2	54

자료 : 기획재정부

1)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9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용도

2) 자금조달과 집행 시기의 불일치 대응, 예기치 못한 추가적인 정책자금 수요 등에 대비한 예비적 성격의 자금

이러한 채권 발행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첫째, 채권발행 한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집행 계획을 사전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첨단전략산업기금과 유사하게 채권 지급보증을 통하여 자금을 조성한 기간산업안정기금 및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사례를 살펴보면, 최초로 기금이 출범할 당시 필요한 채권 보증금액 산출 시 해당 부처 또는 고객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조사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금액을 산출하였음.

[기간산업안정기금 및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개요]

구분	개시 연도	보증 규모	채권 발행규모 산출 근거
기간산업 안정기금	2020년	40조원	① 부족 자금에 대한 부처별 수요조사 결과: 46.4조원 ② 금융연구원 추산 결과: 44.3조원
공급망 안정화기금	2024년	5조원	① 외부전문기관 연구용역 결과: 3.5~5.8조원 ② 수출입은행 수행 수요조사 결과: 4.6조원

자료 : 국가보증동의안 검토보고서 등 자료를 토대로 작성

반면,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경우 첨단산업 지원의 적시성이 중요한 만큼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연구용역 등의 과정을 거치지는 않고 전술한 바와 같이 첨단전략산업 투자수요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 규모를 총 50조원으로 산출하였음.

대외 불확실성 증가 및 첨단전략산업 경쟁격화에 따른 적시성 있는 자금지원이라는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겠으나,

정부는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객관적인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적정 금융지원 규모를 산출하여 실제 지급보증 규모가 너무 과다하게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이며, 집행 계획 및 용처를 사전에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⁹⁾

또한, 최근 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책금융공급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금융이 대기업에 편중될 경우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에 애로를 줄 우려도 있는 만

9)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필요시 타 기금 사례(공급망안정화기금) 등을 감안하여 실수요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금,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채권발행 한도가 적정한 규모로 추산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책금융기관별 금융지원(대출) 잔액 현황] (단위 : 조원)

기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산업은행	138.2	153.8	169.7	190.1	191.5	203.4
기업은행	211.7	239.0	260.7	280.9	296.7	309.2
수출입은행	69.9	71.9	77.4	86.1	83.9	88.3
신용보증기금	47.2	55.0	59.1	61.4	61.8	62.5
기술보증기금	21.8	25.4	26.3	26.5	27.9	28.5
합계	488.8	545.1	593.2	645.0	661.8	691.9

자료 : 금융위원회

둘째, 2025년 발행 한도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보증동의안에 따르면 당초 50조원의 필요자금이 연도별로 10조원 내외로 집행될 것으로 보아 2025년 하반기 중 10조원의 채권 발행규모가 산출되었으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이 지연되면서 2025년 하반기 채권 발행규모를 1.5조원으로 수정하여 추산하였음.

그러나, 동 금액의 산출 근거가 된 5년간 첨단전략산업 투자수요 조사는 2025년의 경우 1년 동안의 수요인 반면, 첨단전략산업기금은 2025년 12월 10일부터 출범할 예정이어서 1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채권 발행을 통한 기금 조성 및 자금 집행이 가능할 것인지 우려가 되므로, 발행한도가 적정한지 및 연내 발행 가능성이 있는

지를 고려하여 기제출된 2025년도 10조원의 발행한도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과거 유사한 기금의 경우에도 출범 당해연도 채권발행현황을 살펴보면 보증동의안이 의결되었음에도 근거법률이 시행된 후 실제 채권 발행까지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경우 5개월 이상,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경우 3개월 이상 등 상당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당초 발행예정액 대비 실제 발행규모는 저조하였음.

[유사한 기금의 출범 당시 채권발행 현황]

구분	근거법률 의결일(시행일)	보증동의안 의결일	보증동의 채권발행액	최초채권 발행일	출범연도 중 총채권발행액
기간산업 안정기금	2020.4.29. (2020.5.1.)	2020.4.30.	40조원	2020.10.21.	0.5조원
공급망 안정화기금	2023.12.8. (2024.6.27.)	2024.2.29.	5조원	2024.10.4.	0.4조원

자료 : 기획재정부

특히, 「한국산업은행법」 시행 이후에도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유보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 등을 구성한 후에야 채권 발행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증동의안이 의결되더라도 2025년에 충분한 검토 기간을 갖고 채권을 발행하여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2025년도 발행 예정 채권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증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상당한 물량의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이 추가로 발행될 경우 채권 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을 사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가가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경우 한국산업은행은 별도의 신용평가 없이 국채에 준하여 신용이 부여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2025년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이미 상당한 물량의 국고채가 추가로 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이 추가로 발행될 경우 채권 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을 사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고채 발행계획]

(단위: 조원)

구분	2025년		
	본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전체 국고채 발행 계획	197.6	207.1 (+9.5)	231.1 (+24.0)
- 순증용	80.0	89.5 (+9.5)	113.5 (+24.0)
- 차환용	117.5	117.5	117.5

자료 : 기획재정부

2025년 10조원 및 2026년 15조원 규모의 기금채가 시장에 추가로 발행되는 경우 공급량 증대 및 시장불확실성 증가로 시장금리 상승(기존 채권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규모 보증동의 기금채가 발행되는 경우 회사채와의 금리 격차가 확대되어 국내 기업들이 금융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특히, 2025년 9월의 국고채 응찰률은 264%로 2023년(271%), 2024년(321%) 대비 하락¹⁰⁾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한 규모의 보증동의 기금채가 추가로 발행되는 경우 동 채권이 국고채 대체 역할을 하여 국고채 수요가 일부 이동할 수도 있으며, 국고채 응찰률이 하락하고 조달 금리가 상승하여 정부의 조달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따라서, 정부는 채권 발행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국고채 및 회사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함으로써 기금채 발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임.

넷째, 국가 전체의 보증채무 규모를 감안할 때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가보증채무란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주 채무자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이에 「국가재정법」¹¹⁾에서는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하고 있고,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보증채무의 전망과 산출 근거 및 관리계획 등

10) 자료 :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2025.10.)

11) 「국가재정법」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에 관한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을 포함하는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2025년 9월 기획재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2025~2029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상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보증채무 잔액 전망을 살펴보면, 2025년은 16.7조원 수준이나, 2029년은 80.5조원으로 국가 전체의 보증채무 잔액 규모가 GDP 대비 2.6% 수준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25~'29년 보증채무 잔액 전망('25~'29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단위 : 조원)

구 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 보증채무	16.7	39.0	54.5	68.6	80.5
(GDP 대비 ¹⁾ , %)	(0.6)	(1.4)	(1.9)	(2.3)	(2.6)
- 한국장학재단채권	11.0	12.2	13.4	14.5	15.6
-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4.2	10.3	14.9	18.7	21.4
-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1.5	16.5	26.2	35.4	43.5

자료 : 2025~2029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2025.9. / 기획재정부)

1) '25~'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GDP 전망 반영

이는 2024년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출범하면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이 새로이 국가보증채무로 포함되어 반영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까지 새로이 국가보증채무로 포함되면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 것으로, 이전 연도의 국가보증채무의 평균적인 수준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임.¹²⁾

12)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보증이 반영되기 이전인 2024년 9월에 제출된 2024~2028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기획재정부)에서는 2028년 보증채무 잔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38.5조원 수준(GDP 대비 1.3%)수준으로 전망하였음.

특히,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이 확정 후 정부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여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을 지원할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민간자금 75조원 및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으로 동 펀드의 재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음.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의 운용방안 개요]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 (정부보증채권 투자자 → 이자)	민간·국민자금 75조원 (금융회사·연기금 및 국민 → 투자이익)
+	
[산은 출연(비용보전 목적)]	[정부재정 후순위 보장] ('26년 1조원 예산반영)

자료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대한민국 경제 제도약 150조원 국민성장펀드가 함께합니다.”(2025.9.10.)

즉, 현재 제출된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자금필요액을 50조원으로 가정하여 채권 발행규모를 산출하였지만, 추후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필요액을 ‘75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24~’28년 보증채무 잔액 전망(‘24~’28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단위: 조원)

구 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 보증채무	15.8	26.5	32.4	35.9	38.5
(GDP 대비, %)	(0.6)	(1.0)	(1.2)	(1.2)	(1.3)
- 한국장학재단채권	10.6	11.5	12.1	12.7	13.2
-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0.2	-	-	-	-
-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5.0	15.0	20.3	23.2	25.3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발행액도 증가하여 국가보증채무도 현재 전망치보다 상당 수준 증가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동 채권발행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증채무의 총량도 함께 살펴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채권 발행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서도 중장기 국가보증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점을 국가보증채무 관리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보증채무가 국가채무로 전환되지 않도록 전체적인 보증채무 규모 및 보증 대상별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개정된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르면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채권 외에 정부 및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자금지원을 받은 첨단전략산업기업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및 기금운용수익과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회사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도 조성¹³⁾되므로, 채권 발

13)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8(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2.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은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이라 한다)과 제29조의9제2항제2호에 따른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으로부

행 이외에 추가로 출연금 등 재원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터 회수한 자금

4.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5. 한국산업은행 및 그 밖의 금융회사 출연금
6.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지원 대상의 타당성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발행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 대상인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은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으로 구분됨.

[첨단전략산업기금 용도 관련: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국민경제 및 산업경쟁력 유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기업”이라 한다) 및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거래를 하거나 첨단전략산업기업에 투자 등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3. 그 밖에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첨단전략산업기업’은 국민경제 및 산업경쟁력 유지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①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한 기술을 보유한 업종, ②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 기술을 보유한 업종, ③ 그 외 미래전략과 경제안보를 위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이는 기존의 반도체 중심의 지원에서 더 나아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백신, 로봇, 수소, 미래차, AI 등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한 지원 대상으로 보임.

[첨단전략산업기업 정의 : 「한국산업은행법」]

구분	상세
(제1항)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 국가첨단전략기술: 반도체(8), 디스플레이(4), 이차전지(3), 바이오(2), 로봇(1), 방산(1) 분야 총 19개 기술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 국가전략기술: 반도체(23), 이차전지(10), 백신(7), 디스플레이(8), 수소(10), 미래형이동수단(5), 바이오의약품(8), 인공지능*(-) 분야 총 71개 기술
(제3항) 그 밖에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 인공지능 분야는 현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기술은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상 국가전략기술 대상 분야로 지정되어 있음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은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거래를 하거나 첨단전략산업기업에 투자 등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9제2항14)에 따르면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물품을 구매하는 기업 및 관련 생산설비 구축 또는 관련 기술 확보에 필요한 기술 투자 등을 하는 기업이 포함됨.

이와 같이 첨단전략산업기업뿐 아니라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및 관련 생산시설을 구축하거나 기술투자 등을 하는 기업도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으로서 자금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첨단전략산업기업이 해외 시장을 개척할 때 구매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

14)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9(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운용 및 회계 등) ②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3. 첨단전략산업기업의 거래상대방이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대출

4.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설비 구축 또는 관련 기술 확보에 필요한 기술 투자 등을 하는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위하여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방법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부대비용

력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고, 개별 첨단전략산업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인 것으로 보임.

다만, 첨단전략산업기술은 다양한 산업에 전방위적으로 활용되므로 이를 통한 생산품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이며, 이러한 결과물을 구매하거나 관련 생산시설 구축 및 기술투자를 하는 기업까지 지원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의 폭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우려도 있어 보이므로,

추후 대통령령을 통하여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지정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기술 및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

특히,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2024년부터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경제안보품목 및 공급망 안정화 관련 시설·기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 기금의 중점지원부문에도 첨단전략산업(이차전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약·바이오 등) 부문이 포함되어 이를 지원하고 있음.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당시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공급망안정화기금과의 중복 문제가 지적되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시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과 관련된 하위 법령 개정 및 운영 시 핵심광물 공급기업 등 필요한

기업에 폭넓게 지원되도록 하되,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영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 등과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라는 부대의견이 채택된 만큼,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이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유사한 기금과 지원대상 등이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공급망안정화기금 개요]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23.12월)으로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
- 한국수출입은행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관리·운용주체로서 공급망안정화기금 채권 발행을 통해 기금재원을 조성하고 경제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분야에 자금을 지원
- 지원분야
 - ① 경제안보품목 등의 확보, 도입 및 공급
 - ②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 ③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의 도입·개발·개량·상용화
 - ④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긴급지원
 - ⑤ 그 밖에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인정하는 분야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중점 지원부문]

구분	유관 품목·서비스(예시)	
① 첨단 전략 산업	이차전지	양극재(전구체, 황산니켈, 수산화리튬), 흑토 영구자석, 전해액, 분리막, 파우치
	반도체·디스플레이	희귀가스(크세논, 네온, 크립톤), 불화수소, 무수불산, 갈륨, 블링크 마스크
	제약·바이오	바이오배지, 레진, 아세노아미노펜
② 자원 안 보	핵심 광물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
	에너지	원유, 천연가스, 우라늄, 수소
③ 국민경제 필수재	식량	밀, 대두, 옥수수, 팜유
	산업원료·장비	요소수, 비료, 가스 터빈
④ 물류 인프라·서비스	항만·터미널, 저장·비축·유통시설 해운·항공 서비스(운송 인프라) 및 유지보수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공급망안정화기금 금융지원 안내 책자(2024.9.)

[2024년 및 2025년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구체적인 지원 실적]

(단위: 억원)

구 분			2024. 9~12월			2025. 1~9월		
			대출	투자	합계	대출	투자	합계
지 원 분 야 별	첨단 전략산업	이차전지	3,500	-	3,500	9,628	-	9,628
		반도체	8,700	1,000	9,700	6,050	-	6,050
		소계	12,200	1,000	13,200	15,678	-	15,678
		(비중(%))	(60.6)	(100)	(62.5)	(35.7)	-	(35.5)
	자원안보	핵심광물	3,990	-	3,990	1,820	-	1,820
		에너지	-	-	0	16,358	-	16,358
	국민경제 필수재	식량	810	-	810	6,100	-	6,100
		산업원료	3,114	-	3,114	1,869	-	1,869
		기계장비	5	-	5	1,800	-	1,800
	물류 인프라	운송	-	-	-	342	200	542
합 계			20,119	1,000	21,119	43,966	200	44,166

* 공급망안정화기금은 2024.9월 최초 출범
자료: 기획재정부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개별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원대상을 적절히 지정하고, 기존의 유사한 정책자금과 구분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역할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3

가. 기금설치 목적

첨단전략산업의 경쟁격화에 대응하여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나. 사업의 내용

□ 사업개요

첨단전략산업 영위 대기업과 산업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소·중견 기업, 관련 인프라·기술 기업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함

○ 지원대상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전략기술 영위 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영위 기업
- 그 밖에 미래산업전략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이 큰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 지원방식 : 대출, 보증, 출자 등

□ 기금 재원조성 규모

'26년 중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15조원 한도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채권 발행 필요

(단위 : 억원)

재원조성 방법	구체적 조성방안	금 액
기금채권 발행	공모 또는 사모발행	150,000
차입금	미 정	-
계		150,000

- 산업부의 업종별 협회를 통한 첨단전략산업 투자수요 조사 결과, 첨단산업 등의 연도별 투자계획은 '25년부터 5년간 약 388조원 수준으로 추정
단, 시장 본격 개화에 따른 AI 투자수요 감안시 첨단산업의 투자수요는 약 500조원 수준으로 추정됨
- 기업 설비투자(CAPEX) 금액의 약 31%가 외부차입인 점* 감안하여,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 규모를 투자수요의 약 15% 수준인 50조원으로 산출
* 국내 비금융영리법인의 차입금 의존도 31.4% ('23년 한은 기업경영분석)

[첨단산업 등의 연도별 투자계획(산업부)] (단위 : 조원)

업종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총계
반도체	60.0	60.0	60.0	60.0	60.0	300.0
이차전지	6.7	6.5	4.4	4.9	5.0	27.5
바이오	2.1	1.5	1.5	1.5	1.5	8.1
디스플레이	9.5	9.5	9.5	9.5	9.5	47.5
로봇	0.4	0.4	0.4	0.4	0.4	2.0
방산	0.7	0.7	0.7	0.7	0.7	3.5
소계	79.4	78.6	76.5	77.0	77.1	388.6

* AI 투자수요 100조원 미반영

- 첨단전략산업 육성의 시급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 '26년으로의 기금 대기수요 이연, 기금 초기 출범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 예상 등을 감안하여 자금집행 전망 및 연도별 채권발행 한도 추산
- '26년 첨단전략산업기금 채권발행 필요 규모는 15조원으로 산출

[(2026년도 보증동의안 제출 기준) 연도별 채권발행 한도 규모 추산]
(단위 : 조원)

구 분	'25년下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자금집행 ¹⁾ (A)	1.4	13.6	8.8	8.8	8.8	8.7
자금회수 (B)	-	-	-	0.5	1.5	2.3
채권상환 (C)	-	-	-	0.2	1.1	2.0
필요자금 (D)=(A)-(B)+(C)	1.4	13.6	8.8	8.5	8.4	8.4
유동성 대응 자금 ²⁾ (E)=(D)x10%	0.1	1.4	0.9	0.9	0.8	0.8
채권한도(F)=(D)+(E)	1.5	15.0	9.7	9.4	9.2	9.2

1) 한국산업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 제29조의9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용도

2) 자금조달과 집행 시기의 불일치 대응, 예기치 못한 추가적인 정책자금 수요 등에 대비한 예비적 성격의 자금

○ **지원방식** :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제한 조건 부과 가능

다. 지원자금 회수 계획

□ 채권만기 상환일정

- 채권발행일로부터 20년 이내로 만기 지정

□ 투명한 기금지원 절차 수립, 단계별 전문적·객관적 사업심사, 지원 사업의 면밀한 리스크 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원활한 자금회수 도모

□ ① 지원대상 사업 확인(예비심사), ② 금융심사(1차심사),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최종심의 등 객관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단계적 지원절차를 거쳐 기금의 지원여부 결정

- (예비심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원대상 및 그 밖에 미래전략 및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해당여부 확인 등

- (1차심사) 산업은행의 금융심사 전문성을 활용하여 계획사업의 타당성*, 차주의 차입금 상환가능성** 등 금융지원 타당성에 대한 종합 심사를 진행

* 사업계획의 적정성, 소요자금·지원규모 적정성 검토 등

** 차주의 사업 이행능력 및 신용상태, 사업·영업전망 기반 상환 계획 등

- (최종심의) 국회 추천 2인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의*에서 투명한 심의를 통해 기금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 예정

*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안) : 국회 소관 상임위 추천 2인, 기재부·금융위·산업부·상공회의소 각 추천 1인, 한국산업은행 임직원 1인 등 총9인 이내

□ 산업은행의 리스크관리 역량을 활용한 면밀한 사후 관리 등을 통해 기금 지원 사업의 부실화 가능성 최소화 및 대출원리금 적기 회수 도모

- (리스크관리) 신용리스크(신용포트폴리오 관리, 자산건전성 관리 등), 금리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 리스크 유형별 관리방안 마련
 - 리스크 유형별 관리지표 설정 및 주기적 측정을 통해 관리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지표별 관리기준 미달시 대응방안 수립

- (신용리스크) 거래상대방의 상환 및 결제의무 불이행으로 약정된 채권을 정상적으로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가능성
- (금리리스크) 금리변동이 기금의 재무 상태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가능성
- (유동성리스크) 자금 조달·운용기간의 불일치 또는 예기치 않은 자금의 유출 등으로 지급불능위험에 직면함에 따른 손실 가능성

- (사후관리) 자금용도 확인, 신용등급 정기점검 및 부실사업 관리 강화 등을 통한 원활한 대출금 회수 도모
 - 계획사업의 진척도 등에 기반한 대출금 지출 관리, 자금용도 확인 및 대출금 실행·회수 등 밀착 관리
 - 차주의 신용상태 및 약정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동태점검, 약정관리 및 담보관리 이행 등